

입안계획서

1. 고시명

- 「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
(관세청 고시 제2023-00호 '23.00.00.)

2. 개정사유

- 관세법 시행령 개정('23.2월)에 따른 고시 현행화 및 품목분류재심사 신청시 민원인 서류제출 규정 완화 등 관세 행정편의 도모

3. 주요 개정내용

- 관세법 시행령(\$106조④) 개정사항 반영(고시\$8②) 등 조문정비
-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시 민원인 서류제출 의무규정 완화(고시\$3,4)
- 품목분류 「신속심사 요청서」 서식(별지 제1호의2) 신설
- 약어 수정(분류위원회 ⇒위원회) 및 용어 현행화(품목·분류분석정보시스템 ⇒ 전자통관시스템) 등

4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 참조

5. 시행 일자 : 2023. 7월

6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
- 담당자 : 양영미 행정관(042-481-7643)
- 제출기한 : 2023.6.30.
- 제출방법 : yym151@korea.kr